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8. 1.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모집업무 위탁시 법률리스크 관리 강화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업무 위·수탁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질서 문란 여부,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동 지침 제7조(위탁업무의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에 따르면 수탁사가 계약내용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주식회사는 보험모집의 위탁과 관련하여 보험모집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OOO 등 4개 보험대리점에 TM(Tele-Marketing) 보험모집 업무를 위탁하고도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4개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업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결과 동 4개 보험대리점이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으므로

* 삼성카드가 2007.6.24.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 따르면, 삼성카드로부터 위탁받은 보험모집만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지 않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위탁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한 보험업법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고 지적

향후에는 보험모집업무를 다른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과정의 법률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탁한 보험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